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52707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준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일

변 론 종 결 2023. 5. 30.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11. 27.자 신탁계약을 22,280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11. 27. 접수 제26140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중 95/100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와 2019. 6. 7. 화성시 D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(이하 '이 사건 오피스텔'이라 한다) 신축공사 설계·감리 용역계약(이하 '이 사건 용역계약'이라 한다)을 계약금액 6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고 C 2020. 10. 14.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금액 중 22,280,000원을 지급하지 않자,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22,28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

C은 2022. 6. 16. 원고에게 위 22,2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(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차전3516)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2. 6. 27. C에 송달되어 2022. 7. 12. 확정되었다.

다. C은 2020. 11. 27.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,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중 각 5/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C과 E은 2020. 11. 27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, 우선수익자를 F조합, 수익자를 C(95/100지분), E(5/100지분)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20. 11. 27.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11. 27. 접수 제261405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22,28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(이하 '이 사건 채무'라고 한다)를 부담하고 있었고, G조합에 대하여 2,356,000,000원의 채무가

있었으며, 소액의 금융계좌 잔액과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,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11. 27. 접수 제26140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등기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22,28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1) 관련 법리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의 경우

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화성시청 세정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H조합, I조합, F조합, J단체,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인 2020. 11. 27.을 기준으로 채무자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

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가) 2020. 11. 27. 기준 C의 적극재산은 ① H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347,163원, ② I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1,043,818원, ③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09,853원, ④ L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,256,151원 및 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486,400,000원[= (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액 4,352,000,000원 - 우선수위권자인 F조합의 우선수익권금액 3,840,000,000원) × 95/100지분] 합계 489,156,985원(= 486,400,000원 + 347,163원 + 1,043,818원 + 109,853원 + 1,256,151원)이 있다.

나) 2020. 11. 27. 기준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22,280,000원이 있다(H조합에 대한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채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. 11. 27. 모두 상환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, 세금은 2021. 7. 부과된 세금부터 체납되었을 뿐 2020. 11. 27. 당시 세금이 체납되었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다)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C의 소극재산(22,280,000원)이 적극재산(486,400,000원)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현주